

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(제40조제1항 관련)

1.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가. "재배포장"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.

나. "화학비료"란 「비료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.

2. 무농약농산물

심사 사항	구비 요건
가.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	1)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·보관하고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)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
나. 재배포장, 용수, 종자	1)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,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)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어야 하며,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3)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
다. 재배방법	1)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, 화학비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2)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3)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·액비는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할 것 4) 병해충 및 잡초는 무농약재배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·조절할 것
라.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	1)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일반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2)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, 식품보존,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)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. 다만,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, 바람에 의한 비산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까지 허용
마. 기타	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할 것

3. 무항생제축산물

심사 사항	구비 요건
가.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	1)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·보관하고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)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
나. 축사 및 사육조건	1) 축사는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과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·관리할 것 2)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과 일반가축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할 것
다.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법	1) 교배는 자연교배, 인공수정, 수정란 이식기법으로 하고, 번식호르몬 처리는 하지 않을 것 2)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, 이유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
라. 전환기간	일반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무항생제농장으로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·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 이상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
마. 사료 및 영양 관리	1) 무항생제가축에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. 다만,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2) 항생제·성장촉진제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니할 것 3) 가축에게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상시 급여할 것
바.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	1)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) 분만, 포유, 거세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동물용의약품 사용할 수 없으며,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고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 거칠 것 3) 생산성 축진을 위하여 성장촉진제,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
사. 운송·도축·가공과정의 품질관리	1)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할 것 2)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·유통·포장 등의 취급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고 일반축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

	3) 동물용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할 것
아. 가축분뇨의 처리	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할 것

4. 취급자(저장, 포장, 운송, 수입 또는 판매): 별표 3 제5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유기식품"은 "무농약농산물등"으로 본다.

5. 거래인증서: 별표 3 제6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생산, 제조·가공, 취급"은 "생산 또는 취급"으로 본다.